

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 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5. 1. 15.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지정·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에 따라, 「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」를 제정하였으나,

2014. 1. 14. 개정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및 「평창군 도시계획 조례」 제33조 별표19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 제1항제19호 별표20 ※ 신규(2005.1.15/ 2014.1.14) 비교 - “별첨”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부패영향평가 : 완료 (2017. 5. 12.) 원안동의
- 2) 입법예고 : 완료 (2017. 5. 19. ~ 6. 8.) 제출의견 없음
- 3) 법제심사 : 완료 (2017. 6. 22.)
- 4) 규제심사, 성별영향분석평가 : 대상 아님
- 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
폐지조례안

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

관계 법령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0 신규비교

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2005. 1. 15)	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2014. 1. 14. 개정)
<p>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생략) 가.~러. 생략</p> <p>2.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. ----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 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(생략)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 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<u>군수가</u> <u>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</u> <u>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</u> <u>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</u> <u>것으로서</u>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(1)~(5) 생략</p>	<p>1.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.~자. 생략</p> <p>2.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(1)~(3) 생략</p>

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
연락처	(033) 330 - 2470